

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2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5. 12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5. 15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06. 02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
나.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(안 제3조)

다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(안 제4조)

라.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1) 기획감사담당관(법무통계담당): 규제심사
- 2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622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4. 10. ~ 4. 30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첨부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조례 제정 취지(필요성)

-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의 수립·추진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 내용 검토

-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 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서 위기 대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함.
 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고성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함.
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(안 제3조)
 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필요 지원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
 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서 위임한 생활인구에 적용할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등의 시책을 명시함.

-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(안 제4조)
 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호에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.
-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(안 제5조)
 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노후·유희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해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,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노후·유희시설 활용범위로 정함.
-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고성군이 자율적·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6. 2. 원안가결